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2002. 9. 1일자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입찰행위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산으로 이루어져 입찰 관련 수수료 징수의 명분이 없어져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를 폐지하고 1,000만원 이상 각종 계약체결 시 수수료를 징수코자 함.

2. 주요골자

- 수수료 항목 중 입찰참가 신청 시 수수료 징수 사항을 삭제하고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의 계약 체결자에 대하여 수수료 징수(안 별표1)

3. 검토의견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발주공사, 물품제조·구매, 용역, 기타 계약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와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던 수수료 중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고 1천만원 이상 각종 계약체결 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2002. 9. 1일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입찰행위가 조달청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해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찰관련 수수료 징수의 명분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건설협회에서는 입찰업무는 자치단체가 자체 행정처리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는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과다 징수함은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입찰 경비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안고 있어 합리적인 방안으로 입찰수수료 징수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었고, 감사원에서도 전자입찰제도는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면입찰을 실시할 때와 마찬가지로 전자입찰참가에 따른 입찰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여 입찰수수료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전자입찰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통보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 참가에 수수료를 징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전자입찰 참가신청이 수수료 징수대상의 사무인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수료 징수 대상이 되는 특정인을 위한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찰에 관한 사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 상대방을 결정한다고 하는 자치단체 자신의 행정목적에 위한 사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봅니다.(참조 대법원판례 97다 21253)

둘째, 수수료 요율에 대한 의견입니다.

전자입찰제도란 인터넷을 통한 입찰시스템으로 입찰의 신속성·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업체의 입찰관련 비용경감과 발주기관의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써, 입찰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면입찰을 실시할 때와 동일하게 입찰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자입찰에 관한 사무는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라는 점과 전자입찰은 종전의 서면입찰과는 달리 입찰관련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 그리고 업계의 건의사항이나 감사원의 입찰수수료 징수업무 통보사실, 타 자치구의 개정내용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의 면제나 인하조정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